

1. 개정이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찰간부후보생”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수사본부 발족과 함께 기존 ‘보안국’의 명칭을 국가안전보장을 총칭하는 의미로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안보수사경찰의 업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제34조의2제1항, 제2항, 제39조제1항, 별표 5의3)

나. “보안경과”를 “안보경과”로 변경(안 제19조 등)

다. “보안”을 “안보”로 변경(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해당 없음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을 “안보경과는 안보경찰”로 한다.

제22조 단서 중 “보안”을 “안보”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수사경과·보안경과”를 “수사경과·안보경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안경과·수사경과”를 “안보경과·수사경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를 각각 “일반경과·수사경과·안보경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제39조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별표 5의3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2호 중 “보안 관련 정보 분석·지원”을 “안보 관련 정보 분석·지원”으로 한다.

②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를 “정보, 안보 또는 외사(外事)에”로 한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3] <신설 2019. 7. 2.>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34조의2제2항 관련)

1. 평가기준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50m 달리기 (초)	7.0 이하	7.01 ~ 7.21	7.22 ~ 7.42	7.43 ~ 7.63	7.64 ~ 7.84	7.85 ~ 8.05	8.06 ~ 8.26	8.27 ~ 8.47	8.48 ~ 8.68	8.69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77 이상	76 ~ 72	71 ~ 67	66 ~ 62	61 ~ 57	56 ~ 52	51 ~ 47	46 ~ 41	40 ~ 35	34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 55	54 ~ 52	51 ~ 49	48 ~ 46	45 ~ 43	42 ~ 40	39 ~ 36	35 ~ 32	31 이하
	좌우 악력 (kg)	64 이상	63 ~ 61	60 ~ 58	57 ~ 55	54 ~ 52	51 ~ 49	48 ~ 46	45 ~ 43	42 ~ 40	39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61 이상	60 ~ 56	55 ~ 51	50 ~ 46	45 ~ 40	39 ~ 34	33 ~ 28	27 ~ 22	21 ~ 16	15 이하
여 자	50m 달리기 (초)	8.23 이하	8.24 ~ 8.47	8.48 ~ 8.71	8.72 ~ 8.95	8.96 ~ 9.19	9.20 ~ 9.43	9.44 ~ 9.67	9.68 ~ 9.91	9.92 ~ 10.15	10.16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1 이상	50 ~ 47	46 ~ 44	43 ~ 41	40 ~ 38	37 ~ 35	34 ~ 32	31 ~ 28	27 ~ 24	23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 51	50 ~ 47	46 ~ 43	42 ~ 39	38 ~ 35	34 ~ 31	30 ~ 27	26 ~ 23	22 이하
	좌우 악력 (kg)	44 이상	43 ~ 42	41 ~ 40	39 ~ 38	37 ~ 36	35 ~ 34	33 ~ 31	30 ~ 28	27 ~ 25	24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31 이상	30 ~ 28	27 ~ 25	24 ~ 22	21 ~ 19	18 ~ 16	15 ~ 13	12 ~ 10	9 ~ 7	6 이하

2. 평가방법

가.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5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 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 ----- -----. 1. · 2. (현행과 같음)
3.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4. (생 략)	3. 안보경과는 안보경찰----- -- 4. (현행과 같음)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 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 여한다. 다만, 수사, 보안,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 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 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제22조(경과부여) ----- ----- ---. ----- 안보----- ----- ----- -----.
제27조(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 반경과에서 수사경과 · 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 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 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안경과 · 수사경과 또는 정보 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 과를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전과의 유형) ① ----- -----안보경 과----- -----. ----- -- 안보경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일반 경과 · 수사경과 · 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 · 수사경과 · 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

1. -----
-----안보경과 -----

2. -----

-----안보경과 -----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
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
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과 방법: 별표 5의2
2.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과 방법: 별표 5의3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경
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
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
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
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
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
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삭 제
3. • 4. (생 략)
5. ~ 7. 삭 제
8. (생 략)
- ② (생 략)
1. (생 략)
2. 삭 제

② -----
-----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

-----.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

3. · 4. (생 략) ③ (생 략) 1. 삭 제 2. (생 략) 3. 삭 제 4. (생 략) 5. 삭 제 6. ~ 8. (생 략) 9. 삭 제 10. (생 략) ④ (생 략) 1. (생 략) 2. 삭 제 3. · 4. (생 략) ⑤ 삭 제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 - 3150 - 2832

안보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 3150 - 1488